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공 보

제2600호 2023. 3. 3.(금)

발행 : 경상남도 편집 : 소통담당관실(055-211-2065, 행정 2065)

경 남 공 보

제2600호 2023. 3. 3.(금)

고 시

제2023-96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 고시····· 2

공 고

제2023-52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18

고 시

◉ **경상남도 고시 제2023-96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 고시

경상남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3일

경상남도지사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규약 전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광역적 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구성 지방자치단체) 특별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로 한다.

제4조(관할 구역) 특별연합의 관할 구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구역을 합한 것으로 한다.

제5조(사무소의 위치) 특별연합의 사무소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

제2장 사무

제6조(특별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① 특별연합은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다음 각 호의 초광역 사무(2개 이상의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를 처리한다.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② 특별연합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세부 내용과 근거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특별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사무의 변경) ① 특별연합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또는 그 외에 특별연합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무에 대하여 특별연합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연합의 장은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사무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사무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사무처리에 관한 특별연합과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4.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본계획 이행 및 추진 정도에 대한 평가
③ 특별연합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특별연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의회

제9조(의회의 구성) ① 특별연합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선임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별연합의회의원(이하 “특별연합의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27명으로 하고 시도별 의원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의회 9명
2. 울산광역시의회 9명
3. 경상남도의회 9명
③ 특별연합의원이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한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의 임기) ①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임된 특별연합의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 선임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장 및 부의장) ① 특별연합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제10조제2항과 같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결사항) 특별연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특별연합 규약의 개정 요청
2. 특별연합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특별연합의 장의 선출
4.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대한 동의
5.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6. 특별연합 사무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7.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 등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3조(의회의 운영 등) ① 특별연합의회의 권한, 소집과 회기,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및 제72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그 밖에 특별연합의회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과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① 특별연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의회 사무기구의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장 집행기관

제15조(특별연합의 장) ① 특별연합의 장은 특별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특별연합의 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1년 4개월로 한다. 다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도 만료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된 특별연합의 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 후 1년 4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특별연합의 장이 사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특별연합의회는 조속히 특별연합의 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⑥ 특별연합의 장이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행정기구) ① 특별연합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와 직원을 둔다.

② 행정기구의 조직과 정원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연합 직원은 특별연합 소속 지방공무원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지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④ 특별연합 직원의 임용·보수·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행정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

제17조(경비부담) ① 특별연합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 사용료 및 수수료
3. 사업 수입
4. 국가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
5. 그 밖에 수입

② 제1항제1호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중 운영비는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예산·회계 등) 특별연합의 예산·결산 등 재무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위원회 등

제19조(특별연합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연합의 사무 등 중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특별연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특별연합 사무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특별연합의 사무처리에 관한 분쟁사항
3. 특별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4.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특별연합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과 직원 재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별연합의 장이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특별연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연합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가입 및 탈퇴) 특별연합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8조에 따른다.

제21조(해산) 특별연합의 해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9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처리 개시일) ① 특별연합의 사무처리 개시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한다. 다만, 특별연합의 사무처리를 위한 준비행위 경과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별로 사무처리 개시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사무처리개시일은 관련 법령의 시행일로 한다.

제3조(특별연합 사무소 위치 결정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에 따른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연합 사무소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최초 임시회 소집의 특례) 특별연합 설치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중 상호 협의로 정한 자가 소집한다.

제5조(특별연합 설치 지원행위에 관한 특례) ①「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사무국은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특별연합의 자치법규 입안, 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별연합 설치 후 특별연합의 행정기구와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자치법규 시행 전까지 개별법령에 따른 영향평가 및 조례·규칙 심의 등의 자치법규 입법 절차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

[별표 1]

구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초광역 철도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2. 초광역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에 관한 사무 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무 라.「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8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광역교통특별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무 바.「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한 의견제출에 관한 사무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통합 광역 환승할인 및 환승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무 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에 관한 사무 라.「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5항에 따른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마.「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광역급행버스 운영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3.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에 관한 사무	바.「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광역 급행버스(보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무
4. 초광역 탄소중립 산업 기반 구축에 관한 사무	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나.「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5. 초광역 수소경제권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수소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라. 수소산업 기업 등 유치에 관한 사무 마. 수소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6. 초광역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가. 조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친환경 스마트 조선기자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7. 초광역 자동차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가. 자동차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 자동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다. 자동차산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무 라. 자동차산업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8. 초광역 항공산업육성에 관한 사무	가. 항공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나. UAM 항로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무
9. 초광역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가.「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산업 육성 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무 나.「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유치에 관한 사무 다.「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 라.「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동남권 5G 특화망 지역거점 구축에 관한 사무 마.「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존 제조산업 대규모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사무 바.「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디지털 융합 혁신인재 양성에 관한 사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10. 초광역 메가 R&D 혁신 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나.「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따른 거점형 연구개발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사무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계 R&D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라.「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 따른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무
11. 초광역 투자유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기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사무 나. 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 및 통상환경 대응에 관한 사무
12. 초광역 지역혁신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무	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학과 지역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무 나.「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13. 초광역 문화·관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 상호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나.「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무 다.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14. 초광역 먹거리 공동체 구축에 관한 사무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 따른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관한 사무 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무 다.「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
15. 초광역 보건·의료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나. 감염병병원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다.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라.「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마.「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지역방호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나.「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16. 초광역 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 및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무 라.「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진 및 화산 재해 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무
17. 초광역 대기환경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나.「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무
18. 초광역 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무	가. 초광역 물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별표 2]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무(제6조 관련)

구 분	처 리 사 무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사무	가.「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관련 작성·제출 사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협의 및 공고,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공공시설등의 귀속·이관 및 양여 등 공공시설 관리청과 협의에 관한 사무 라.「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전 고지에 관한 사무 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후 고시 및 관련 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8항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사.「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아.「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자.「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기존의 공공시설 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사무 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준공확인에 관한 사무 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공사 완료 시 고시에 관한 사무 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준공 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 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사무 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위한 운송사업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4항에 따른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허가에 관한 사무 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송사업 상속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더.「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운송개시 기일·기간 지정 및 연장에 관한 사무 러.「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및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버.「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수리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2.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서.「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계획 변경 제한에 관한 사무 어.「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에 관한 사무 저.「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에 관한 사무 처.「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명령 이행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커.「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사무 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계획의 승인 취소·변경, 공사 중지·변경 등 명령 및 고시에 관한 사무 퍼.「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계획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허.「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및 자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사무 고.「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3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취소 및 운송사업 면허취소, 운수종사자 자격 취소 시 청문 실시에 관한 사무 노.「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2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제4호에 따른 상속 및 운임 미신고,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 미제출,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 방해, 기피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수립 및 협의에 관한 사무 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무 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례 규정에 관한 사무 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및 변경 시 고시 및 관계서류 송부에 관한 사무 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시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의 해제에 관한 사무 자.「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지정 해제 통보·고시에 관한 사무 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 시 다른 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무 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사무 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에 관한 사무 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고시 및 관계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시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무 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기존 공원 및 녹지 보존 명령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러.「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서 접수에 관한 사무 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 의뢰에 관한 사무 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및 공고, 관리청 통지,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에 관한 사무 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미착수 및 토지·시설 미처분 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4항에 따른 의무 이행시까지의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의무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중지 및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에 관한 사무 처.「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재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계획 및 변경계획 수립·고시에 관한 사무 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에 관한 사무 퍼.「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6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재정비시행계획 승인 시 입주업체 및 관계 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관한 사무 허.「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7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 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8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공기관, 지방공사, 법인의 일반물류단지재정비사업 실시 요청 접수에 관한 사무 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관련 지정·승인·인가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처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무

구 분	처 리 사 무
3.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무	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처분 사실 고시에 관한 사무 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관리에 관한 사무 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물류단지관리계획 접수에 관한 사무 보.「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법 등의 조치 권고에 관한 사무

공 고

◉ 경상남도 공고 제2023-524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 내용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경 상 남 도 지 사

업체명	처분근거	처 분 사 유	처분 일자	처분 내용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 (김해시 소재)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2항제7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2. 너. 2)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7호 나목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 한 경우	2023.3.3.	과징금 3천만원

끝.